

Public Library Development Program in Malaysia

말레이지아의 公共圖書館 開發計劃

—計劃에서 現在까지 —

Donald Wijasuriya 著

黃文成譯

(國立中央圖書館)

譯者註：本稿는 1976. 5. 31—6. 5 서울에서 開催된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에서 發表된 것을 번역한 것으로
著者인 Donald Wijasuriya氏는 말레이지아 國立
中央圖書館長에 在職하고 있다.

I. 序 言

말레이지아의 公共圖書館施設開發에 따른 組織的 計劃은 同國이 獨立된지 거의 10년이 經過한 1968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公式化되었다. 그것은 專門機構인
馬來圖書館協會, 아시아財團, 유네스코, 말레이지아
國家委員會 및 馬來公共圖書館發展計劃을 立案함에 있어
싱가폴國立圖書館長인 Hedwig Anuar女史로 하여
금 助力토록 해준 싱가폴政府의 積極的인 協力의 結果
로서 公式化된 것이다. 同計劃案은 1968年 馬來圖書館
協會에 依해서 發刊되었으며 한편 審議를 거치기 為하여
國立圖書館委員會(國立圖書館發展計劃을 為하여 19
66年에 構成된 政府委員會)에 提出된 바 있다. 國家圖
書館委員會는 1969年5月5日 開催된 會議에서前述한 바
의 計劃案을 詳細히 檢討하기 為한 分科委員會를 構成
하였다. 이에 따라 同委員會는 그 報告書에서 同計劃
上의 모든 建議事項을 大體로 承認한 바 있다.

이와같은 事實은 特히 다음 事項에 對해 政府의 承認을 要請한 國家圖書館委員會로부터 闡議에 提出된
報告書에 나타난 것이다.

(i) 馬來內의 各州에는 반드시 州立中央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하며 地方政府機關에 依해서 公共乃至 會員制圖書館이 運營되는 곳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州當局에 依해서 引繼되지 않으면 안된다.

(ii) 馬來第2次5個年開發計劃(1971—75)에 公共圖書館開發基金 M\$ 60萬이 正式으로 計上되어야 한다.

(iii) 各州의 5個年開發計劃案에 公共圖書館發展策이樹立되어야 한다.

(iv) 公共圖書館이 없는 州에서는 圖書館法이 制定

되어야 한다.

(v) 公共圖書館은 聯邦, 州 및 地方政府側의 代表와
더불어 州單位로 獨立的公 共圖書館法人에 依하여 運
營되어야 한다.

如斯한 結果로 政府는 모든 建議案을 품넓게 受諾하
고 國家圖書館委員會로 하여금 그 實行에 따른 必要한
措置를 取할 權限을 賦與한 것이다.

計 劃

前記 計劃案은 馬來公共圖書館計劃樹立과 그 發展狀
況에 對한 가장 품넓은 解說書이다. 一般的 用語로 그
것은 州法令에 依據 設置된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이 規
定한 公共圖書館의 地方分散의인 システム으로 나타난
것이다. 同計劃案의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
다.

主要建議事項의 要旨

I. 計劃樹立

(i) 充分한 公共圖書館發展을 期하려면 20년이 所要
될 것으로 推定된다. 圖書館發展 5個年計劃은 1971—75
年間의 發展計劃으로 부터 始作하여 「國家發展計劃」에
統合되어야 한다. (第6項)

(ii) 活動評價指針뿐만 아니라 諸目標를 設定한 圖書
館의 暫定的 여러 原則를 利用한 中期計劃을 1969—70
年間에 마련한다. (第6項 및 附錄 第3項)

(iii) 第1次 計劃期間인 1971—75年에는 優先順位에
따른 하나의 指針으로서 最少限의 業務基準에 依據 各
州에 設置된 中央公共圖書館에 對한 方案이 講究되어
야 한다. 結局 이와같은 中央圖書館은 各州에 있어 公
共圖書館本部로서의 役割을 하게 된다. (第6項 및 附錄
第4項)

(iv) 하나의 國立圖書館이 設立된 경우 圖書館諸般
原則의 定期的 改正을 비롯한 公共圖書館業務의 計劃
立案은 國立圖書館長을 局長으로 한 國立圖書館諮詢局
이 擔當하여야 한다. 同機構는 모든 形態의 圖書館의

國家計劃을樹立하고 調整하게 된다. (第6項)

II. 立法

(v) 公共圖書館設立, 編制, 財政的 支援方案을 規定한立法을 建議한다. (第6項, 및 附錄 第2項의 a와 b)

III. 構成 및 組織

(vi) 公共圖書館은 聯邦, 州 및 地方政府側代表와 더불어 州單位로 獨立的 公共圖書館法人에 依하여 設立, 運營되어야 한다. (第6項)

(vii) 提案된 馬來國立圖書館은 國家圖書館시스템의頂點이어야 하며 公共圖書館에 對한 리더쉽, 顧問 및 其他業務를 規定하여야 한다. (第6項)

IV. 財政

(viii) 公共圖書館의 年例經常費는 各州 그리고 聯邦政府에 依한 建物, 備品, 本源의 書庫費等 主要費用에 依해서 補填되어야 하며, 地方當局은 基金, 建物 및 基地 other 類似한 手段의 形態로 可能하다면 어디서건 公共圖書館에 寄附하여야 한다. (第6項)

(ix) 聯邦政府는 國立圖書館으로 因하여 低水準의經濟 및 人口로 因하여 圖書館의 充分한 費用을 充當할 수 없는 州에 對하여 年間 1人當基礎로 基金을 供給해주어야 한다. (第6項)

(x) 公共圖書館發展計劃實行을 爲한 地方乃至 其他資金供給源을 建議한다. (第6項)

V. 職員

(xi) 司書職을 定해진 바의 有資格專門職으로 認定하여야 한다. (第6項1과 2)

(xii) 司書教育을 爲한 獎學制度實踐에 最優先을 두어야 한다. (第6項 3)

(xiii) 馬來圖書館學校는 有資格司書의 需要充足을 爲하여 設立하여야 하며 아울러 이와같은 司書教育院은 東南아시아의 司書教育院으로서의 役割을 遂行할 수 있다.

(xiv) 專門 및 非專門職員에 對한 奉給體系 및 職務一覽表의 改善을 建議하여야 한다. (第4項4)

VI. 藏書

(xv) 中央圖書館은 最少限의 基本藏書로서 書籍10萬冊의 備置를 目標로 하여야 한다. (第6項 附錄4의 3)

(xvi) 藏書構成에 있어서는 自國語로 된 書籍에 最優先을 두어야만 한다. 이와같은 書籍의 基本目錄을 備置한다. (附錄 第7)

(xvii) 圖書選定과 除籍에 따른 方案이 마련되어야 한다. (附錄 第5 및 第6)

(xviii) 中央資料處理센터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6項第5)

VII. 業務

(xix) 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社會住民에게 無料로

對等하게 奉仕하여 주어야 한다. (第6項)

(xx) 職員의 餘裕가 있고 圖書資源이 充分한 경우에만 奉仕의 幅度를 增大 實施하지 않으면 안된다. (第6項)

(xxi) 兒童奉仕部署의 設置와 開發에 優先을 두어야 한다. (第6項)

(xxii) 第1次計劃期間中 聯邦土地開發當局과 國立農村開發省은 各其 別個로 自動車文庫奉仕를 爲始한 農村地域에 對한 奉仕活動을 展開하여야 하며 차츰 公共圖書館法人이 引繼맡도록 하여야 한다. (第6項)

VIII. 建物

(xxiii) 中期計劃期間(1969—70)과 第1次計劃期間인 1971—75年間에 建物을 改造할 수 있다. (第6項)

(xxiv) 新築建物은 向後 20年間의 擴張에 適合하게끔 設計되어야 하며 國立圖書館 대지 國家圖書館諮詢問局이 規定한 原則에 符合하여야 한다. (第6項)

IX. PPM의 役割

公共圖書館常任委員會는 1971—75年間 最低基準에 適合되도록 圖書館을 支援함에 있어 定期刊行物, 參考書籍 및 兒童圖書의 基本目錄을 마련하여야 한다. (第6項)

(xxv) PPM (Persatuan Perpustakaan Malaysia)은 國家發展에 있어 公共圖書館이 차지하는 役割에 비추어 一般公衆의 教育方案을 繼續 模索하여야 한다. (제6항)

(xxvi) PPM은 公共圖書館의 非專門職員에 對한 教育을 마련하여야 하며 아울러 圖書館學校가 設立될 때까지 專門職員의 教育課程도 마련하여야 한다. (제6항의 3)

(xxvii) PPM은 公共圖書館法人, 國立圖書館 및 國家圖書館諮詢問局等을 代表한다. (제6항의 I, II)

X. 國立圖書館의 役割

(xxix) 國立圖書館은 公共圖書館業務調整 圖書館業務基準의 實踐과 定期的改正, 建物, 備品, 本源의 書庫等에 따른 主要費用에 對한 聯邦補助金을 傳達하여 주어야 한다(제6항2와 5)

(xxx) 國立圖書館은 公共圖書館業務를 充分히遂行할 수 있는 各州에 對하여 一人當聯邦補助金을 마련하여야 한다.

(xxxi) 國立圖書館은 모든 公共圖書館法人의 代表的地位를 가지며 書籍 및 定期刊行物의 基本目錄마련을 爲始하여 公共圖書館에 對해 顧問役割을遂行하여야 한다. (제6항2와 5)

(xxxii) 國立圖書館은 公共圖書館法人이 마련한 圖書館業務에 따라 聯邦土地開發當局과 國立農村開發省이 規定한 農村圖書館業務를 調整하여야 한다. (제6항5)

XI. 圖書館諮詢局의 役割

(xxxiii) 圖書館諮詢局은 國立圖書館長을 長으로 한다. (제6항 1)

(xxxiv) 前記 諮問局은 國立圖書館, 各級大學圖書館, 公共圖書館, 特殊圖書館 및 도큐멘테이션센터를 비롯한 모든 種類의 圖書館의 業務와 資料를 調整企劃하여야 한다. (제6항 1)

(xxxv) 圖書館建物의 基本計劃에 對한 前記 諮問局의 承認은 義務의이어야 하며 이를 爲하여 聯邦主要補助金의 要請을 한다. (제6항 5)

業務執行機關

다른 發展計劃에서와 같이 公共圖書館發展計劃樹立에 있어 執行部署를 創設하거나 指定함에 따른 重要性은 決코 지나친 強調일수는 없다. 實際上 執行機構의 存在는 計劃遂行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計劃立案 및 計劃承認段階에서도 重要하다. 이는 馬來에서도 設置된 바 있다.前述한 바의 計劃案이 나오기 2年前인 1966年에 專門司書를 長으로 한 馬來國立文書館內에 國立圖書館業務局이 設置되었다. 같은 해 國家圖書館委員會가 設立된 바 이는 모든 聯邦各部處의 代表들로構成되었으며 同委員會의 幹事로서 役割하는 國立文書館業務總長과 함께 政府側 幹事長을 委員長으로 한것이었다. 이리하여 計劃案의 提出 承認에 바로 뒤를 이어 國家圖書館委員會는 그것의 決議事項을 執行한 國家圖書館業務局과 더불어 執行機構로서의 機能은 遂行하게 되었다. 아무리 1972年の 國家圖書館法의 通過와 國立圖書館諮詢局의 設立에 依하여 國家圖書館委員會의 存在機能이 停止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依해서 모든 業務執行上의 責任은 馬來國立圖書館에 歸屬되게 된 것이다. 同時に 이를 委하여 國立圖書館內에는 하나의 首腦職位가 새로 마련되었던 것이다.

遂行過程

第2次 馬來計劃(1971—75)發展相이 이제야 마무리되었고 同計劃案中 主要建議事項이 實踐遂行함에 有利하여 け겼을 뿐더러 同時に 主要問題領域을 確認하기도 便利하여 け겼다.

計劃樹立

비록 同計劃案이 公共圖書館業務分野의 計劃과 圖書館諸原則의 定期的 評價檢討를 爲한 機關으로서 國立圖書館局을 提示하였지만 「1972年 國立圖書館法」에 依하면 國立圖書館法에 負荷된 責任은 단지 다음과 같다. “馬來國內의 無料公共圖書館과 圖書館業務의 全國의 씨스템推進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同法은 國立圖書館의 目的의 하나로서 다음

을 規定한 바 있다. 即

“그는 國民의 啓蒙, 즐거운 共同體生活을 爲한 施設을 提供하여 준다는 것이다.”

前記 規定에 依據하여 國立圖書館은 쿠아라룸프聯邦地域內에 있는 公共圖書館만을 除外하고 公共圖書館의 企劃立案과 關聯되어 있다. 따라서 大體的으로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그것이 公共圖書館業務計劃을樹立하고 이와같은法人이 組織되지 않은 곳에서는 州或은 地方政府當局이 그것을 遂行하는 것이다. 비록 國立圖書館이 이와같은 國體의 代表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그 지난 바의 役割은 一種의 諮問役割에 치나지 못하는 것이다. 州라는 立場에서 國立圖書館이 業務面에 責任을 가진다는 事實은 励할 바가 못된다. 이는 如前所述 州의 當面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州立場에서 始作된 公共圖書館發展案은 쿠아라룸프에 集中되어 있는 專門의 技術的 및 行政上의 專門技術이나 知識을 利用할 수 있도록 國立圖書館의 批評을 爲하여 提出하는 것은 所望스러운 일이다. 前記計劃案은 또한 國立圖書館諮詢局이 모든 形態의 圖書館의 國家計劃樹立調整을 建議하였다. 이는 비록 「1972年的 國立圖書館法」이 國立圖書館은 國家圖書資源의 開發利用을 推進, 調整할 것을 規定하고 있다고 하여 나타난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1972年的 國立圖書館法」이 國立圖書館自體에 公共圖書館의 振興 및 調整에 對한 責任을 賦與하고 前記計劃案에서 建議한 바의 諮問局에는 그러한 責任을 賦與하지 않은 事實은 留意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도큐멘테이션, 圖書館 및 文書館(即 國家情報씨스템이라는 概念, NATIS)의 調整, 開發에 차츰 比重을 더하여 가는 立場에서 볼 때 政府는 도큐멘테이션, 圖書館 및 文書의 統合調整에 따른 全般的인 問題에 對한 研究調查를 爲한相當한 水準의 豫備委員會設置에 따른 審議要請을 받아 온 것이다.

立法構成 및 組織

前記 計劃案은 公共圖書館의 設立, 組織 및 財政的 支援方案을 爲한 州立法을 마련한다면 모델케이스가 될수있을 것임을 建議하였다. 1971年 以後 國立圖書館은 馬來半島內의 各州가 위와 같은立法를 採擇하도록 積極推進해 왔다. 오직 Sabah 및 Sarawak에서만 어떠한 試圖도 이루어지지 못했으니 그것은 「1972年的 國立圖書館法」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分明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即

“同法은 西部말레이지아에 限하여 適用하여야 한다라고”

馬來半島內의 한州를 除外한 모든 州에서 州立公共圖書館法人規定의 通過를 보았던 것이다. 이는 비록

Selangor, Penang, Kedah, Perlis, Kelantan, Trengganu와 Pahang에서만 州法人이 實際로 設立되어 積極的인 機能을 遂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말이다. 아울러 馬來半島의 나머지 各州는 年中 그들 각각의 州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하게 될것이 確實視된다. 여기서 州의 公共圖書館立法은 法務局과 提携하여 國立圖書館이 法規草案을 馬來國語인 Bahasa Malaysia로의 翻譯完了直後인 1973~1976年間에 主로 採擇하였다는 事實을 留念함이 무엇보다 重要하다. 前記 計劃案에 따르면 聯邦, 州 및 地方政府側은 公共圖書館法人의 代表가 되는 것이다. 馬來圖書館協會뿐만 아니라 國立圖書館도 前記 諸法人의 代表의 地位를 갖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國立圖書館은 上記法人中一部의 執行部署에 對해 業務를 遂行한다. 아무리 그와 같은 代表의 地位만이 州立公共圖書館法人과 國立圖書館間의 連結 特히 技術的 諮問과 支援等의 面에서의 連結을 容易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最少限의 基本的原則의 維持를 保證하여 줄 必要는 없는 것이다. 國立圖書館으로 하여금 州立公共圖書館組織의 内部 或은 그 사이에 業務調整을 可能토록 하여 주는 것은 아니다. 調整이란 提言과 自發的 協力問題 바로 그것이다. 나중에라도 國立圖書館의 地位를 이와같은 面에서 強化하기 為하여 1972年的 國立圖書館法를 適當히 改正하는 일이 必要할련지도 모른다. 한편 政府當局이 그 設置方案을 模索中인 앞서 말한 바의 準備委員會는 研究調查의 對象이 될세하다. 따라서 法規가 여러 面에서 需要에 相應한 公共圖書館規定이 틀림없이 되도록 하여주지 못한다는 事實이 分明하다. 馬來半島에는 아직도 公共圖書館法規를 制定하였지만 그 施行日字는 定하지 못하고 있는 州가 몇군데 있다. 이는 오로지 基金不足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따라서 立法은 第1次的 段階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다.

財政

公共圖書館의 年間 經常費는 各州와 聯邦政府의 建物, 備品 및 本源의 書庫等 主要費用이 負擔한다는 前記 計劃의 建議는 原則上 受諾된 바 있다. 그러나 實際に 몇몇 州는 州歲入源으로부터 主要開發經常費를 充當하였다. 州當局에 依한 公共圖書館規定이 比較的 세로운 事實이기 때문에 原則上의 問題에 지나치게 主眼을 두는 것은 賢明하지 못한 일로 생 각되었으며 金額으로 表現한 原則은 나아가 公共圖書館事業計劃의 猶豫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의 諸規定이 各種 方案에 依한 募金을 為한法人을 為하여 마련된 것 이지만 如何든 州政府가 必要한 資金을 供給하여 줄것을 約束한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비록 經常費의 年間豫算額이 州立法人에 依하여 마련 承認된다고 하더라도 窮極的인 資金調達을 為하여 그는 州政府에 提出되지 않으면 안된다. 몇몇 州를 除外하고 公共圖書館에 對한 年間 經常費의 供給은 大體의으로 대우 不充分하다. (다음 表 參照) 이는 州歲入이 極度로 限定되어 있고 또한 州의 經濟의 面에서의 優先順位가 公共圖書館을 為한 實質的豫算配定을 許容하고 있지 않는다는 事實을 考慮한다면 納得可能하다. 前記 計劃에 依하면 低水準의 經濟的 面지 人口等으로 因하여 充分한 圖書館事業費를 充當할 수 없는 各州에 對하여 年間 1人當 基礎로 한 資金供給을 해야 할 旨을 建議하고 있다. 이와같은 目的에 立脚한 資金供給이 國立圖書館의 年間經濟豫算에 나타난 적은 전혀 없었지만 慎重히 考慮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國立圖書館은 하나의 代表으로서 州라는 立場에서 大은 數의 公共圖書館이 圖書資料의 不足現象을 補充하기 為해서 보다 큰 規模의 書庫를 만들 方案을 模索中이다. 그리하여 萬一 各州의 圖書需要量이 部分의이나마 國立圖書館에 依하여 充當될 수 있다면 州의 財政缺如上の 問題는相當히 緩和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一般的으로 公法의 通過와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의 設立은 大體로 財政狀態를 改善시키지 못하였다는 事實을 留念함은 合當한 일이다. Selangor와 Perak을 除外하고 10萬弗을 超過하는豫算을 가진 各州에서는 그와 같은 立法의 通過를 보지 못하였다. 따라서 獨立的인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은 必要한 基金을 調達하는데 보다 나은 位置에 있으리라는 主張이 아직도 支持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年間 經常費

State	Existing Authority	Expenditure	
		1967	1974
Kedah	State Public Library Corporation	M \$ 18,363	58,560(1975)
Kelantan	"	8,983	30,187
Pahang	"	—	52,431
Penang	"	40,326	62,000
Perlis	"	—	16,055(1975)
Selangor	"	52,930	819,173(1975)
Trengganu	"	—	—
*Johore	Local Govt.	51,628	120,552
*Malacca	"	14,501	6,000(1972)
*Negeri Sembilan	"	5,442	7,500
*Perak	"	83,461	226,910
Sabah	State & Local Govt.	122,649	333,340
Sarawak	"	77,151	396,752 (Central Library only) (Includes branches)

* 주립공공 도서관은 아직 설립되지 않았음.

1971—75年間의 第2次 馬來計劃에 依據하던 公共圖書館設立에 따른 州支援資金으로 總 50萬M \$이 供給되었으며 이에 反해 1976—80年間의 第3次 馬來計劃에 따르면 同支援資金은 150萬M \$로 增額되었다. 이와같은豫算配定은 建物改造를 為해서 뿐만 아니라 本源의 書庫 및 備品等 主要費用의 充當을 為하여 州로 각州에 對해支出되는 것이다. 筆者가 이글을 執筆할 當時 聯邦補助金이 Selangor, Penang, Kedah, Kelantan 및 Pahang 等 諸州에 支給된 바 있으며 한편 Perlis와 Trengganu에는 보다 大量의 补助金이 支給될 것이다. 第3次馬來計劃에 依한 資金供給이 2次의 그것에 3倍以上이나 된다고 하지만 그에도 不充分하며 1978年の 中期計劃評價期間中에 全般的인 面에 對한 再考의 必要性이 나타날 수도 있다. 建物의 新築이나 既存 建物의 擴張을 積極的으로 考慮의 對象으로 삼는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이라면 州立公共圖書館法人條項에서 規定한 바 이를 바 調達된 公債基金에 對해 慎重한 利用方案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點을 劝한다. 例로서 다음에 引用한 Pahang公共圖書館法人規定(1973年の 規定 11號) 第10條3項과 5項 그리고 同 16條 및 17條는 다음과 같다.

第3項 法人의 權限과 權能

10. 法人은 다음의 目的으로 主要支出充當金을 返済 및 返済保證의 時期와 方法^{或은} 州當局이 承認한 바의 利子率時期 및 條件으로 何時라도 借用 可能하다.

- (a) 土地獲得으로 法人이 支拂하여야 할 补償金
- (b) 本規定의 目的上 土地, 建物 및 其他 不動產取得에 따르는 費用
- (c) 公共圖書館設備와 自動車文庫設置費用^{或은} 그와 같은 建物이나 車輛의 改善費用 그리고 그에 關係된費用
- (d) 本規定의 目的한 바를 遂行함에 있어서 必要한 其他 費用

第5項 法人의 基金과 歲入

16. (1) 本規定의 目的上 이에 法人이 基金을 管理,統制할 바를 定한다.

- (2) 法人의 基金은 다음 事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a) 州立法議會는 何時라도 必要한 金額의 支出을 承認한다.
 - (b) 어느 地方當局이라도 法人의 目的上 必要한 바의 金額을 寄附할 수 있다.
 - (c) 法人의 目的上 州 或은 聯邦政府 其他 州政府 或은 어떤 個人이던지 必要한 金額을 何時라도 寄附할 수 있다.

(d) 法人은 何時라도 必要한 金額을 公債로 募金할 수 있다.

(e) 法人은 必要한 金額을 手數料나 罰金形式으로 徵收할 수 있다.

(f) 基金投與額에 對한 모든 利子

(g) 法人에 彙屬한 動產 或은 不動產으로부터 直接或은 間接으로 必要한 바의 金額을 法人이 獲得할 수 있다.

17. 法人의 基金은 다음의 諸般 費用을 辨濟하는데 使用 할 수 있다.

(a) 本規定 第5項 두번 째의 細部項에서 言及한 會議參席者에 對한 手當

(b) 法人의 職員 및 專門的 및 其他 顧問들의 備給, 手數料 或은 补償

(c) 本規定에 依據 法人의 權限行使에 附隨되는 諸般費用

(d) 法人이 合法的으로 募金한 公債에 對한 利子

(e) 借用金의 辨濟費

(f) 法人所有 財產에 對한 減價償却費를 積立함이 適切하다.

州立公共圖書館法人은 法令의 乃至 非營利性 半官半民機關이기 때문에 州나 聯邦政府等과 軟性借款交涉이 可能해야 하며 또한 年間經常豫算中에서 貸付供與를 積立이 可能하여야 하며 이는 本規定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職 員

大體의 面에서 前記 計劃案의 職員에 對한 모든 建議事項이 實踐에 옮겨져 왔다고 할 수 있다. 司書職은 하나의 專門職으로 認定되며 同專門資格所持者들은 備給水準에서 國內 다른 專門그룹에 比較할 만 하다. 圖書館學 學位所持者 Mara 技術研究所 或은 ALA(英國圖書館協會의 司書資格) 初俸은 640M \$이며 反面 圖書館學 大學院學位를 所持한 사람들은 初俸이 720M \$ 내지 800M \$이며 이는 그들이 名譽學位나 一般學位를 所有하고 있는지의 與否에 따른다. 그러나 同職位는 아직도 流動的이며 政府는 全般的인 職位를 檢討하는 國立委員會의 報告書를 現在 審議中에 있다. 長來圖書館協會는 前記 委員會에 異例의 面을 指摘하고 本規定에 對한 司書들의 備給條件의 全般的改善을 促求한 文書를 提出한 바 있다. Mara 技術研究所의 非學位者를 為한 3年間의 學位課程뿐만 아니라 必要한 人力養成에 關心을 가진 聯邦政府로서는 海外圖書館學校에서의 將來가 預期되는 卒業生의 教育을 為한 獎學制度를 實施해 온 바 있다. 平均 12名의 訓練生이 國立圖書館附設機關에서 6個月乃至 9個月間 奉職한 然後 每年 海外로 派遣된다. 以外

에도 馬來圖書館協會는 海外有資格專門試驗을 爲한 時間制教育을 實施한다. 1975年까지 馬來의 潛在的 司書들은 英國圖書館協會의 여러 試驗을 치른 바 있다. 이는 結局 ALA(英國圖書館協會의 司書資格)의 그것과 通한다. 1976年 3月부터는 濟洲圖書館協會의 司書資格(ALAA)을 爲한 濟洲圖書館協會의 登錄試驗을 爲한 教育課程이 設定된 바 있다. 長來圖書館協會는 또한 非專門人을 爲해 이따금 短期間의 教育을 實施한다. 訓練部署를 管理하는 國立圖書館은 또한 非專門職에게 公式試驗을 爲한 教育課程을 實施한다. 이들 教育課程은 國立圖書館의 管理下에 있는 共同利用者局(Common User Service)內에서 勤務하는 職員을 爲한 것이지만 그는 또한 州立公共圖書館을 爲始한 다른 機關의 職員에게도 門戶를 開放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教育課程中 그 어느 것도 特히 公共圖書館部門과 調整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모든 代案에도 不拘하고 專門人の 不足現象은 아직도 深刻한 資金壓迫을 받는 州立公共圖書館은 債給體系의 가장 낮은 水準에 놓일 수 있는 有資格初步專門人을 選拔함에 있어 그 不足은 한층 더하다.

많은 有資格初步專門人們은 圖書館經驗面 以外에도 職務經驗面에서 배우不足한 點이 많으며 그들 앞에 가로 놓인 많은 課題들에 對處해 나가기 어려운 것이다.勿論 債給水準을 相當한 水準으로 引上시키지 않고 보다 老練한 候補者를 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같은 限界에 直面한 州當局은 國立圖書館과 馬來圖書館協會側의 條件이나 支援에 보다 信賴를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公交롭게 아직도 海外機關의 忠告에 지나치게 依存하는 傾向이 있다. 政府는 國立圖書館을 公共圖書館의 振興, 調整, 및 開發에 따른 權限을 가진 機關으로 指命하였으며 이리하여 이와 같은 開發에 關聯된 外國機關은 國立圖書館과의 協議를 거쳐 그 事業의 媒介機能을 遂行함이 바람직하다.

비록 現在는 國內에서 勤務하고 있는 有資格專門人數가 150名以上이라고는 하지만 其中 極少數만이 公共圖書館分野에서 奉職하고 있는 것이다.

1968年 不過 29名의 有資格司書가 國내各機關에서 勤務하고 있었다는 事實을勘案한다면 現在의 專門人の 統計數字는 全般的인 職位에 있어相當한 改善이 있었음을 立證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當時 公共圖書館에서 勤務한 有資格司書가 3人에 不過하였다는 事實에 注目한다면 오늘날의 26名이란相當한 進展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職位는 아직도 滿足스럽지 못한 것이다. 全般的地位의 改善方案으로서 職員財政藏書라는 面에서 馬來圖書館協會는 1975年 公共圖書館委員會를 設置한 바 있으며 이는 現在 原則草案을 審議 結末을 짓고 있는 중이다.

직원 : 공공도서관 부문

State	Existing Authority	Staff		
		Professional	Non-Professional	Total
Kedah	State Public Library	2	7	9
Kelantan	"	1**	2	3
Pahang	"	1	3	4
Penang	"	2	13	15
Perlis	"	1**	3	4
Selangor	"	7	50	57
Trengganu	"	1**	2	3
Johore	Local Govt.	1	9	10
Malacca	"	—	2	2
Negeri Sembilan	"	—	4	4
Perak	"	3	24	27
Sabah	State & Local Govt.	3	63	66
Sarawak	"	4	43	47

* 외국기관에 의한 공공도서관은 제외.

** 직위없음.

* 公共 도서관 장서

State	Existing Authority	Collections	
		1967	1975
Kedah	State Public Library Corporation	9,300	15,000
Kelantan	"	1,500	3,000
Pahang	"	—	12,000
Penang	"	22,000	36,000
Perlis	"	—	10,606
Selangor	"	85,100	112,000
Trengganu	"	—	—
Johore	Local Govt.	22,000	56,577
Malacca	"	7,800	6,500
Negeri Sembilan	"	12,300	13,500
Perak	"	42,700	95,000
Sabah	State & Local Govt.	48,300	106,790
Sarawak	"	68,300	300,279

* 외국기관 관리장서 제외.

藏 書

藏書의 增加와 開發을 다룬 前記 計劃案은 各個의 州立中央圖書館이 最少의 基本藏書로 10萬卷의 書籍儲置와 馬來語로 쓰여진 資料에 優先을 두어야 할것임을 建議한 바 있다. 여기서 1967年の 藏書規模와 現在의 그것과의 사이의 統計를 比較하면 매우 對照的이다. 大體로 이와같은 事實은 앞서 本論에서 論한바의 年間 經常豫算配定으로 나타난 것이다.

州立中央圖書館의 10萬卷의 書籍儲置原則은 州의 教

有人口에 關해서 뿐만 아니라 州首都의 教育人口에 對해서 州立公共圖書館法人에 依해서 아무리 疑問視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奉仕對象으로 삼을 만한 集團인 것이다. 大部分의 州首都의 人口가 10萬未滿(Kangar, Perlis 州만이 12千名임) 또는 그 以上이며 教育人口는 한층 더 적다는事實을 考慮한다면 中央圖書館으로서 10萬이란 目標는 지나친 野心이라고 생각된다. 아마도 教育人口에 關해서立案된 最初의 目標는 長期에亘하여 成就되도록 할이 보다 適切할 것이다. 自國語로 된 資料의 보다 많은 供給의 必要性을勘案하여 20年間에 걸쳐 實現될 人口 1人當 1冊이라는 前記計劃의 目標는 達成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自國語로 된 資料의 產出高는 아직도 相對的인 面에서 적은 數量이다. 現在 公共圖書館에 依한 相對的으로 적은 圖書購入을 為한 豫算配定이란 面에서 볼 때 前記計劃에서 建議된 中央資料處理센터의 設置는 若干 時期尚早일 수 있다. 그러나 後에라도 그 設立이 看過되어서는 決코 안되는 것이다. 그동안에 公共圖書館은 相互圖書館貸借協定에 依據 國立圖書館과 其他 圖書館의 藏書를 充分히 利用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國立圖書館은 이와같은 모든 要請資料의 本山이어야 하며 要請받은 資料位置에 關係없이 資料要請을 充足을 為해서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 圖書館相互貸借規定이 現在 制定中에 있으며 이는 大學圖書館과 州立圖書館內의 資料利用을 極大化하기 為해서이며 한편 이는 公共圖書館을 包含하여 幾大 施實될 수 있다.

奉仕活動

오늘날 馬來의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은 共同體의 모든 住民에게 無料로 行하여진다. 빌린 資料의 損失 내지 破損에 對備 读者로서 或은 納本으로서 登載時에만 手數料를 받는 것이다. 年間 定期購讀物에 對해서는 이미 費用負擔이 免除되어 있다. 圖書貸與奉仕는 가장一般的이며 反面 參考奉仕業務는 보다 規模가 큰 公共圖書館에서 行하여 진다. 비록 兒童用 藏書가 一部 公共圖書館에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特殊兒童圖書는 原則보다도例外인 경우가 더욱 많다. 카셋트나 테이프 필름 等과 같은 非圖書資料는 全般的으로 備置되어 있지 못하다. 自動車文庫奉仕를 為始한 農村地域에 對한 奉仕活動은 거의 보잘 것이 없다. 오직 Selangor 및 Sabah州에서만 自動車文庫奉仕活動이 行해지고 있다. 其他的 州 특히 Johore, Pahang 및 Kedah 州等에서도 또한 위와같은 奉仕活動을 計劃中이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具體的措置도 取해 진바 없다. 農林, 農村開發省은 繼續하여 農村地域에 對한 圖書館奉仕活動을 하지만 그것은 아직도 初步的段階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各級 病院과 身體障礙者에 對한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은 相對的으로 馬來國內에서는 알려진 바 없다. 이에 한 團體는 어느 程度까지 自發的機關에 依해서奉仕를 받는다. 大體로 馬來公共圖書館은 都市指向의이며 아직까지도 開發段階에 머물러 있다.

建物

現在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은 主로 改造된 建物에서 運營되고 있다. Sarawak와 Perak州에서만 最近 5年間의 새로운 圖書館建物을 新築한 바 있으며 反面에 Sabah州立圖書館 新築建物을 現在 計劃中에 있다. 많은 州에 있어서 公共圖書館을 다른 施設과 統合시키는 아이디어에 對한 關心이 늘고 있다. 이는 圖書館을 全體 地域社會生活에 統合하기 為해서 뿐만 아니라 貸金所得能力에 따라 圖書館을 設置하기 為함이며 이는 또한 그 自立을 支援하여 줄 수 있도록 하기 為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大規模共同體에 從事하는 開發業者들은 基本的生活의 즐거움으로서 圖書館utilization을 為하여 敷地마련을 為하여 住宅事業計劃이 반드시 必要하다는事實을 提案한 바 있다. 이와같은 式으로 公共部門에 對한 負擔은 어느 程度 輕減될 수 있는 것이다.

結語

前述한 바에 依하여 馬來公共圖書館活動狀況은 아주 初步的發展段階에 处해 있음이 明白하여졌다. 前記計劃上의 基本對策은健全한 것이지만 現在의 財政計劃에 비추어相當한 改善의 必要성이 있는 것이다. 國立圖書館은 以上과 같은 公共圖書館의 振興, 調整 및 開發에 있어漸次主要役割을 遂行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財政 및 人力面에서相當한 強化의 必要성이 있는 것이다. 州라는 面에서 보더라도 財政上의 對策을相當히 改善할必要가 있는 것이다. 馬來圖書館協會에 依해서 發刊된 公共圖書館原則은 州當局으로 하여금 現存 施設을 精密하게 評價하도록 하게 한다. 同時に 專門有資格職員은 가장 優先적으로 모든 州立公共圖書館에 任命되거나 않으면 안된다. 公共圖書館奉仕活動은 國民의 經濟的 및 社會의 利益을 為한 엄청난 潛在力を 지니고 있으며 이와같은 活動을 가장 優先하여 展開하여야 할 時期가 到來한 것이다.